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4. 9 선고 2022가단4811 판결 [채권양도양수,금원지급 및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주식회사 C(변경전:주식회사 D)

변 론 종 결 2024. 3. 5.

판 결 선 고 2024. 4. 9.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277653 판결금 채권을 주식회사 E로부터 양수받은 F으로부터 다시 양수받았고, 피고들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측이 산지개발과 형질변경 등을 위한 공사 등을 하는 노력으로 피고들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청산인으로 피고 주식회사 C의 위 판결금 채무를 해결하지 아니한 채 피고 주식회사 C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배임, 횡령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277653 판결금 양수 채권, 불법행위 채권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50조 제1항),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 11,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양도인인 주식회사 E가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갑 제1, 11,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양수인 F이 양도인 주식회사 E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식회사 E의 F에 대한 채권양도사실이 피고들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어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채권양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주식회사 C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배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E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277653호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2017. 2. 3.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승소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패소하였고, 주식회사 E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698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9. 13. 항소기각되어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원고가 주식회사 E의 판결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에서 승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하고, 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기각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3,700만 원 부당이득 반환 채권

갑 제3 내지 10호증,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와 F 등을 상대로 한 이 법원 2013가합2353 사건과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43511)에서 원고와 F이 피고 B 명의 주택과 토지에 대한 새시공사, 토목공사, 펜스 공사를 하여 피고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과 이자 채권(주택 새시 공사 및 토목공사 대금 37,400,000원과 이자 9,357,000원 및 펜스 공사 대금 3,500,000원과 이자 890,000원)이 피고 B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와 F이 G나 주식회사 D(피고 주식회사 C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가 아닌 피고 B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과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 B으로부터 그와 같은 채권의 변제 충당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H은 G의 직원으로 G가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B과 D는 원고와 F이 수행한 공사의 하자 등을 다투고 있어, 위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H이 확인한 내용만으로 피고 B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대금 채권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주장이 배척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다. 예비적 판단 : 피고 B의 예비적 상계 항변

설령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와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3가합2353 판결금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은 손해배상금 84,035,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 15.부터 2014. 6.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므로 이를 원고의 청구금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의 예비적 상계항변은 이유 있고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대원